

● 제27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8. 3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조규영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45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조규영 의원(찬성 9명)

나. 제안일 : 2017. 8. 3.

다. 회부일 : 2017.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2)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의 출석 수당을 신설하고, 보존묘지의 지정 기준에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또는 분묘)를 포함하는 내용임.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수당 신설 필요성(안 제4조제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같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묘지(또는 분묘)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범위 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③ ~ ⑥ (생략)

- 서울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설 심의기구(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인 바,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 실적 개최가 없었음.
-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

나. 보존묘지 기준 확대(안 제5조의1제1항제3호)

- 개정안은 같은 법에서 정한 보존묘지 기준외에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신설하여 확대 적용토록 하였음.
-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참고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애향정신 함양’을 보존묘지 지정 기준에 포함한 경우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8개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생략)

2 개정 조례안에 대한 평가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우리 공원 웰컴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로 570 망우묘지공원 내)를 신축하여 ‘공동묘지’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유명인사 묘역과 그 인문학적 가치를 알리며, 연간 36만명의 이용자에게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망우묘지공원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근·현대사 선구자(50여명)들의 묘소가 분포되어 있어서, 시대적 증언과 문화적 다양성이 현존하는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망우리 공원 웰컴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집행부의 보존묘지 지정현황(참고자료-③)을 보면, 단 한건의 지정도 없었고,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었음.
- 보존묘지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로서 묘지공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향토사학자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수시 협의를 가지며 구체적인 업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개정안의 ‘위원회 위원 출석수당 신설’과 ‘보존묘지 지정기준 확대’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법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①

시립장사시설 현황

□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 서초구 원지동 68

- 설 립 : '11.12.14 : 화장로 11기 신축 ※ '12.1.16 : 서울추모공원 가동
- 시설규모
 - 부 지 : 대지면적 152,359㎡
 - 건 물 : 연면적 18,262㎡, 1개동(화장장, 유족대기실)
 - 화장로 : 11기(1일 화장평균 50건, 최대 60구) ※ 가동 10기, 예비 1기

□ 승화원(화장시설)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연 혁
 - 1930.03 : 설립(서울시 흥제동)
 - 1970.09 : 현 위치 이전(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 1986.12 : 승화원 신축(현대식 화장로 15기)
 - 1987.01 : 서울시설공단 인수·운영
 - 2000.12 : 화장로 7기 증설(총23기 운영) 기사대기실 및 화장실 신축
- 시설규모
 - 부 지 : 30,976㎡
 - 건 물 : 연면적 8,795㎡, 4개동(화장장, 봉안당, 관리동, 기사대기실)
 - 화장로 : 23기(1일 평균 100건, 최대 116구) ※ 가동 21기, 예비 2기

◎ 묘 지

구 분	계	용미리제1	용미리제2	벽제리	망우리	내곡리
소 재 지	5개소	괴주 광탄 용미리	괴주 광탄 용미리	고양시 벽제동	중랑구 망우동	남양주 진접읍
총면적(천㎡)	7,150	2,836	1,071	1,375	1,762	106
분 묘 수(기)	60,169	34,386	7,528	9,537	7,671	1,047
사 용 기 간	—	'63.11.1 ~'98.8	'73.12.26 ~'98.8	'63.11.1 ~'91.5.4	'33.5.27 ~'73.3.25	'68.5.10 ~'82.12.31

◎ 봉안시설

구 분	계	승화원 추모의집	용미리분묘형 추모의집	용미리벽식 추모의집	용미리건물식 추모의집	용미리왕릉· 벽식추모의집
면적(㎡)	8,517	985	456	2,644	2,958	1,474
안치능력	90,311	13,434	7,650	5,348	36,945	26,934
안치위수	89,934	13,170	7,537	5,348	36,945	26,934
잔여위수	7,194	264	113	152	5,324	1,341
비 고		'95.12.6 ~ '97.4.16 만장	'98.12.28 ~ '99.6.27 만장	'99.6.27 ~ '00.1.6 만장	2000.4.29 ~ '01.12.6 만장	2002.1.11 ~ '01.9.19 만장

◎ 산골공원 및 자연장 (추모의 숲1, 유택동산2, 자연장지)

구 분	위 치	면적(㎡)	안치능력/안치위수	사용기간
산골공원(3개소)	승화원, 추모공원, 용미묘지	12,879	무제한 / 114,767	'03. 5. 1 ~ '16. 9월 현재
자연장(2개소)	시립 용미리 1묘지	27,030	15,633 / 13,972	'08.11.13 ~ '16. 9월 현재
다목적 자연장	시립 용미비 1묘지	8,500	10,042 / 2,204	'16.8.30 ~ 16. 9월 현재

지정기관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부산광역시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대구광역시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인천광역시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광주광역시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민대상 수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대전광역시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민장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시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강원도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충청북도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충청남도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충청남도정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전라북도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전라남도	1. 향토사적 또는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도정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경상북도	별도 규정 없음
경상남도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그 밖에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주도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위 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570 망우리묘지공원 내(도로명 주소)				
기 간		2017.06. ~ 2019.12.				
내 용	접촉	· 부지 : 5,000 m^2 (보상 5,000 m^2)				
		· 웰컴센터 공사면적 : 2,137 m^2 (지상 3층)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지상1층	주차장(1,184 m^2) 계단실,E/V(40 m^2)	1,224 m^2			
	지상2층	관리사무소(103 m^2), 공공화장실(92 m^2) 이용자 편익시설 - 카페테리아,매점(154 m^2) 방문자 휴게공간(111 m^2) 계단실,E/V,창고(44 m^2)	504 m^2			
	지상3층	다목적홀(295 m^2) - 사이버추모관 - 중·고생 단체방문자 지원실 - 세미나실 관리용창고(32 m^2) 공공화장실(42 m^2) 계단실,E/V(40 m^2)	409 m^2			
	합계		2,137 m^2			
(실연별)	총계	7,839				
	재원별	사비 7,839				
	회계별	일반회계 7,839				

참고자료 ④

보존묘지 지정 현황

지정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보건복지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김해시 진영읍 본원리	2009. 7.10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의령남씨묘	인천시 서구 원당동 산82-1	2009. 5.18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시	부안임씨 전서공파 용곡공(임정) 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월산리 141-1	2006.12.11
	부안임씨 양양부사공파 임목의 묘	세종시 장군면) 제천리 산14-4	2006.12.11
	부안임씨전서공(임난수)묘	세종시 연동면(동면) 옹호리 산53-7	2007. 2.14
	함안윤씨충남공(윤각)묘	세종시 도담동 260-109번지	2007. 2.14
	완산이씨(임중의부인)묘	세종시 연서면(서면) 용암리 산18	2007. 2.14
	부안임씨 장악원정(임중)의 묘	세종시 장군면 제천리 산14-4	2007. 2.14
	청주곽씨선주공(곽희태)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고정리 산128	2007. 6. 8
	청주곽씨지포공(곽지흠)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고정리 산128	2007. 6. 8
	청주곽씨송계(곽창징)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고정리 산128	2007. 6. 8
	경주이씨 문헌공파 초려 이유태 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중촌리 산234	2008. 6.20
	경주이씨 문헌공파 참판공 이용 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중촌리 산324	2008. 6.20
	경주이씨 문헌공파 쌍계처사 이단몽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중촌리 산324	2008. 6.20
	경주이씨 문헌공파 신창 맹씨 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중촌리 산324	2008. 6.20
	곡산강씨 아산공파 강순룡 묘	세종시 연기면(남면) 고정리 산54-2	2010. 5.24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결성장씨 결성군 청계공파(장하) 묘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산117	2008. 6.20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	
합계	17개소		